

2. 신청인이 법인(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은 제외한다)인 경우: 법인 등기사항증명서
3. 신청인이 외국인(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을 포함한다)인 경우: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
4.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: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
5. 신청인이 「재외국민등록법」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: 여권정보

#### 제6조(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) ① 삭제 <2012. 12. 3.>

- ② 시 ·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,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<[개정 2012. 12. 3.](#)>
- ③ 시 ·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 · 관리하여야 한다.<[개정 2012. 12. 3.](#)>

#### 제7조(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)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[개정 2021. 4. 20.](#)>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
  - 가. 상호
  - 나.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) 및 주민등록번호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)
  - 다. 주사무소 소재지
  - 라.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
2.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
 

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(이하 "국제물류주선업자"라 한다)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·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·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[개정 2010. 8. 30., 2012. 12. 3.](#)>

③ 시 · 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 · 광역시 · 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 · 도"라 한다)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 · 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.

#### 제7조의2(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)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(이하 이 조에서 "등록기준 신고시점"이라 한다)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 ·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 · 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③ 시 ·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.
- ④ 시 ·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.

[[본조신설 2012. 12. 3.](#)]

#### 제8조(사업승계의 신고)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 · 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도 · 양수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를,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속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를,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 합병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를 그 권리 · 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· 도지사에게 제출